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특정 회사의 자산에 대한 잔고 정보를 동 회사 서버에 연결*하여 전송하는 것이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의 망분리 적용 예외**에 해당 하는지 여부
	* 내부망 서버에서 DMZ PROXY 서버를 경유하여 해당 금융회사 서버에 연결 **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)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됩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.
	 다만,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하나,
	○ 특정 회사에 대한 자산관리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상기 예외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**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